

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- 2355호

#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7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 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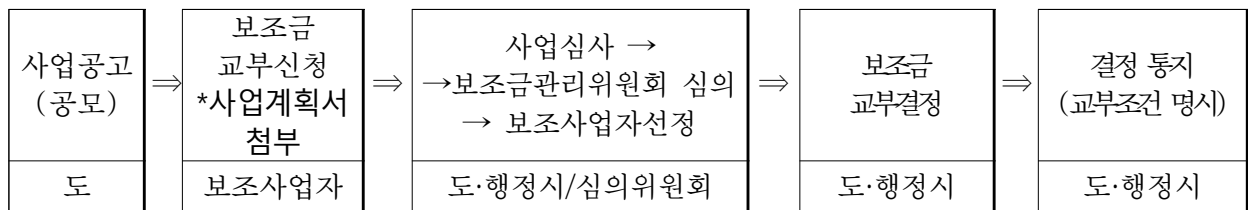
- 사업명: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
- 사업대상: 양축농가(가금, 양돈), 축산관계시설 등
- 사업기간: 2025. 8. ~ 12월
- 사업비: 22,086,670원(세부내역 별첨)
- 사업내용: 별첨

## 2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: 2025. 7. 8.(화) ~ 2025. 7. 25.(금)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 신청(문의처 동물방역과: 710-2152)
- 접수장소: 도(동물방역과), 제주시(축산과), 서귀포시(청정축산과)
- 신청서류
  - 보조금 지원신청서, 보조금 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(견적서 등 포함), 축산업허가증, 청렴이행서약서, 지방세완납증명서
  - (법인의 경우) 단체소개서, 법인등기부등본, 조합원명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주명부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이사회회의록,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.

## 3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
- 심사기준: 사업의 적합성, 파급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 실적 등
- 결과통보: 개별 통보



## 4. 기타사항

- 서류심사,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 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대상자 선정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

- 붙임 1.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(요약) 1부  
2. 보조금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(서식)  
3. 청렴이행서약서(서식)

## < 유 의 사 항 >

### 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### 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###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###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### 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(☎064-710-21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24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

### ◀ 사업 목적 ▶

- ◇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
- ◇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

### 시책 및 추진방향

- 농장내 발생하는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장비 확충
- 도축장·축산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 방역체계 구축

### 근거법령
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
-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지원)

### 사업량 및 사업비

- 사업량: 1개소
- 사업비: 22,086,670원(보조 13,252,000, 자부담 8,834,670)  
\* 보조비율은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반영

### 사업 시행요령

- 사업주관: 도 동물방역과
- 사업대상: 축산관계시설, 양축농가(가금, 양돈)
- 사업내용: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
- 세부 실시요령
  - (사업신청)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도(동물방역과)로 제출  
\* 약취저감시설(또는 장비)이 포함되게 사업신청서 작성(의무조건)
  - (대상자 선정) 약취저감시설(또는 장비) 포함여부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 선정  
\* 2025년 E2마커 백신 접종 농가 및 가축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농가 우선 선정
  - (사업추진)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- 변경시 사전 승인 후 추진
  - (사업관리)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취소, 자금회수 등 행정조치
  - (사업정산) 사업 종료시 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

[서식1]

##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보조사업명 :

2. 보조사업 신청자

○ 명 칭(성 명) :

○ 소재지(주 소) :

○ 전 화 번 호 :

3.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

○

○

4. 보조사업 소요경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보조금	자부담	기타

5. 보조사업 기간(착수 예정일 ~ 완료 예정일)

6. 기타사항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붙임 : 사업계획서 1부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자(기관명 및 대표자) :

직인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

[서식3]

# 사 업 계 획 서

사업개요

- 사 업 명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
- 경비총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       %)
- 보조금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- 자부담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
보조사업의 효과

- 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해안변 환경정비	재료비 홍보비	500 630	·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<작성예시> 해안변 환경정비	재료비 홍보비	500 630	·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

##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.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39조)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 . . .

	단체명	대표		(서명)
단체명	보조금 책임관리자	직책	성명	(서명)
단체명	보조금 실무책임자	직책	성명	(서명)